

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

다빈도 부당청구 사례

[가정방문형 급여]

2024. 10.

h·well

국민건강보험



요양심사실

1

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기준 위반

부당사례1

A 수급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병원 방문하여 개인 진료를 받았음에도 해당 시간을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.

부당사례2

사찰을 운영하며 사찰 옆 별도 건물에서 생활하는 B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자가 사찰 불교 행사에 참석하는 일자에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자택이 아닌 사찰 법당에서 행사에 필요한 음식준비, 법당 청소, 행사 후 뒷정리 등을 처리했음에도 해당 일 수급자에게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.

부당사례3

○○재가노인복지센터의 C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시작 태그 전송 후 수급자의 생업(시장에서 미역 판매) 도움을 포함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으나, 생업을 지원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.

적발 사유

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(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)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,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급여를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.

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.

관련
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24호(2021.12.27.)~제2023-289호(2023.12.29.))
 - 제3조(적정급여제공 등), 제15조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,
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
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, 제19조(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)

※ 본 자료에 표기된 '고시'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'법(시행령·시행규칙)'은 「노인장기요양법(시행령·시행규칙)」을 의미함.

2

서비스 일수·횟수를 늘려서 청구 (방문요양)

부당사례

A 요양보호사는 D 수급자에게, C 요양보호사는 B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방문 및 급여제공을 하지 않았으며, 요양보호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각각의 수급자 가정에 두고 보호자가 대신 RFID를 전송하게 하여 서비스 일수·횟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.

※ A 요양보호사는 B 수급자의 가족이고, C 요양보호사는 D 수급자의 가족임.

적발 사유

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내용 및 시간 등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(RFID 전송 포함)에 사실대로 작성한 후,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.

관련 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24호(2021.12.27.)~제2023-289호(2023.12.29.))
 - 제6조(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), 제15조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,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

※ 본 자료에 표기된 '고시'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'법(시행령·시행규칙)'은 「노인장기요양법(시행령·시행규칙)」을 의미함.

3

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위반

부당사례

가족 요양보호사 A 는 B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가족 관계를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하고,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(1일 60분)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(RFID 태그)를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.

적발 사유

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,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.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,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.

관련 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24호(2021.12.27.)~제2023-289호(2023.12.29.))
 - 제6조(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), 제15조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,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, 제23조(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)

※ 본 자료에 표기된 '고시'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'법(시행령·시행규칙)'은 「노인장기요양법(시행령·시행규칙)」을 의미함.

4

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

부당사례

○○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이자 프로그램 관리자인 A는 B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 자택 방문하여 업무(고시 제17조 제6항)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.

적발 사유

방문요양의 프로그램 관리자(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)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사망, 입원, 월 중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.

관련 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24호(2021.12.27.)~제2023-289호(2023.12.29.))
-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, 제19조(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)

※ 본 자료에 표기된 '고시'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'법(시행령·시행규칙)'은 「노인장기요양법(시행령·시행규칙)」을 의미함.

5

원거리 교통비용 가산기준 위반

부당사례

A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간 이동거리가 3.7km인 B 와 C 수급자에게 2022.5.~7.(총 3개월) 기간 동안 총 61회, 수급자 간 이동거리가 3.7km인 C 와 D 수급자에게 2022.8.~10.(총 3개월) 기간 동안 총 60회에 걸쳐 수급자 2인에 대하여 원거리교통비를 각각 산정함.

※ B 및 D 수급자 원거리 교통비 5,100원, C 수급자 원거리 교통비 3,400원으로 동일 날짜에 2인 각각 지급 시 소액만 환수함.

적발
사유

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 교통비용은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 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방문 당 산정함.

단, 수급자 사이 거리가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만 산정함.

관련
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24호(2021.12.27.)~제2022-219호(2022.9.26.))
 - 제21조(원거리 교통비용), 제22조(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)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
(요양기준실 제2021-2호(2021.12.24.)~제2022-1호(2022.3.29.))
 - 제6조(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교통비용 신청, 중단 및 변경절차 등)

※ 본 자료에 표기된 '고시'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'법(시행령·시행규칙)'은 「노인장기요양법(시행령·시행규칙)」을 의미함.